청렴계약제 및 청렴서약서

▣ 청렴계약제 운영 ☞ 계약시 청렴서약서 작성 확대

○ 추진목적 : 도급공사의 품질완성도 향상 및 투명성·청렴성 제고

○ 주요내용 : 감독관(검사·검수자) 청렴서약서 작성

- 일정금액 이상 도급공사(용역·물품)시 감독관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화(제출)

▷ 대 상 : 물품 1천만원 이상, 공사(용역) 2천만원 이상

임직원행동강령시행내규 제18조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,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,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매의 계약과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. 〈신설 2014.9.24〉

④ 임직원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·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·장비 또는 인력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. 〈신설 2014.9.24.〉

청 렴 서 약 서

□ 계약번호
□ 계약명
□ 계약상대자
□ 계약기간
(※물품 일천만원, 공사・용역 이천만원 이상)

본인은 공사(용역·물품) 감독관(검수자)으로 임명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감독관(검사원)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.
2.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로부터 금품・향응・편의제공 등을 일체 수수하지 않겠습니다.
3.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로부터 청탁・알선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.
4. 기타 공사(용역)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적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5.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.

20 년 월 일

감독관 (검사·검수자) 성명 (서명)